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제안이유

○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용을 위한 국민체육센터내 수영장 건립과 용흥, 남은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함

3. 주요내용

□ 성주국민체육센터 건립

○ 재산현황

· 위 치 : 성주읍 성산리 67-1번지 일원 10,694㎡

· 소 유 자 : 성주군

· 시설면적 : 연면적 2,290㎡

· 시설현황 : 수영장(25m 6레인), 헬스장, 체력측정실, 생활강좌실 등

· 구조 및 층수 :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, 지상2층

· 건립사업비(추정) : 7,000백만원(기금 3,200, 군비 3,800)

○ 활용방안

· 군민들이 수영 활동을 통해 건전한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

· 체력증진과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주군민건강관리의 장으로 활용

○ 기대효과

· 건전한 여가 체육공간 조성으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

□ 보건진료소 부지매입

○ 대가면 용흥보건진료소

· 현부지 : 대가면 용흥리 734-3번지 대지 213㎡(건물연면적 - 75.50㎡)

· 이전부지 : 대가면 용흥리 471번지 답 1,108㎡

· 부지매입계획 : (당초) 상기이전부지면적 중 495㎡

(변경) 상기이전부지 전체면적 1,108㎡

· 사업비(기확보) : 45백만원

○ 수륜면 남은보건진료소

· 현부지 : 수륜면 남은리 162-1번지 대 283㎡
(건축물연면적 - 75.5㎡)

· 이전부지 : 수륜면 남은리 137번지 답 1,352㎡

· 부지매입계획 : (당초) 상기이전부지면적 중 495㎡
(변경) 상기이전부지 전체면적 1,352㎡

· 사업비(기확보) : 30백만원

○ 부지매입면적 변경사유

· 1필지의 면적이 495㎡정도가 되는 적정한 토지가 없어 토지소유자에게 분할 매입코자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어려워 부득이 전체면적을 매입코자 함.

○ 활용방안

· 지역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 및 주차장으로 활용

○ 기대효과

· 노후시설의 이전신축으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

※ 붙임 : 20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총괄표 1부

4. 관련법령

○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

○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

5. 검토의견

□ 제출자, 제안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.

□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.

□ 금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항은 국민체육센터내 수영장 건립과 보건진료소(2개소) 신축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서,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건물 신축의 경우 10억원 이상, 토지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은 공유재산 관리(변경)계획을 세워 당해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(변경)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 건은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된 사안으로서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,

□ 공유재산은 이용관리 측면에서 효율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한 구체적 사용계획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앞으로 군 재정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특히, 각종 공공목적의 시설 확보에 대하여는 산발적이고 중복적 투자로 인한 공유재산의 비효율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변 경

2011년도 관리계획 변경 총괄표

회계명 : 일반회계 (단위 : ㎡, 천원)

구 분			상 반 기(당초)			하 반 기(변경)			합 계			비고
		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
취득	계	토지	13	10,070	1,020,860				13	10,070	1,020,860	
		건물	4	221.1	128,580	**2**	**2,460**	**75,000**	**2**	**2,460**	**75,000**	
		기타							4	221.1	128,580	
						1	**2,290**	**7,000,000**	**1**	**2,290**	**7,000,000**	
	1.매입	토지	13	10,070	1,020,860				13	10,070	1,020,860	기의결
		건물	4	221.1	128,580	**2**	**2,460**	**75,000**	**2**	**2,460**	**75,000**	**금회**
		기타							4	221.1	128,580	기의결
	2.교환으로 취득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	3.기타 취득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**1**	**2,290**	**7,000,000**	**1**	**2,290**	**7,000,000**	**금회**
		기타										
처분	계	토지	3	9,572	34,929				3	9,572	34,929	
	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	4.매각	토지	3	9,572	34,929				3	9,572	34,929	기의결
	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	5.양여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	6.교환으로 처분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	7.기타 처분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사용 및 대부허가		계										
	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
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제안이유

○ 구)성산청소년수련원 시설의 노후화로 사용이 불가능 하고, 우범자들에 의한 화재발생, 도난, 파손 등의 우려가 있으며 매각하여 군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□ 구)성산청소년 수련원 매각

○ 재산현황

- 위 치 : 용암면 죽전리 80번지 외 5필지 7,057㎡
- 소 유 자 : 성주군
- 건물현황 : 교사동 외 8동(전체 연면적 764.90㎡)
- 구조 및 층수 : 시멘트 벽돌, 지상1층
- 재산가액 : 토지 34백만원, 건물 41백만원 정도

○ 추진계획

-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 절차 이행

○ 기대효과

- 노후 재산에 대한 관리비용 절감과 활용하지 않는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다른 군유재산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

※ 붙임 :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 1부

4. 관련법령

○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제36조제1항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
○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

5. 검토의견

□ 제출자, 제안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.

□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.

□ 금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

○ 구)성산청소년수련원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비용 절감과 열악한 군 재정확충을 위하여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관리 측면으로 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나,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당해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당해예산에 반영하라는 것 임에도 본 건에 대하여 2012년도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고 사료되며,

○ 현재 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부 공유재산의 관리상태를 보면 성주읍 삼산리 일대의 환경안정화시설 주위의 매입한 재산중에서 빈집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고, 일부 주민들이 무단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등으로 주변환경이 매우 불결할 뿐 아니라 방화나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어 이들 공유재산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

□ 2012년도 관리계획 총괄표

회계명 : 일반회계 (단위 : ㎡, 천원)

구분			상반기			하반기			합계			비고
		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
취득	계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1.매입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2.교환으로 취득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3.기타 취득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처분	계	토지 건물 기타	6 9	7,057 764.90	34,152 40,615				6 9	7,057 764.90	34,152 40,615	
	4.매각	토지 건물 기타	6 9	7,057 764.90	34,152 40,615				6 9	7,057 764.90	34,152 40,615	
	5.양여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6.교환으로 처분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사용 및 대부허가		계 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